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55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윤영석·조경태·박덕흠

이종배 · 임종득 · 박형수

이상휘 • 구자근 • 김태호

김상훈 · 서일준 · 정동만

박대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아·유치원생·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자녀 1명당 연 30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나 초등학생이 되면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만 인정되고 학원 등 사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태권도장,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영어, 수학 등의 학업을 보완하기 위한 학원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남. 특히 맞벌이 부모의 경우 사교육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대체 역할을 해주고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어 있음.

이에 초등학생의 경우 미술·음악학원 및 체육시설에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 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 세액 공제 적용 교육비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 여 자녀교육에 따른 가계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 1호마목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300만원"을 "500만원" 으로 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에 지급한 교육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③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	
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	
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u>.</u>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1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	
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	

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 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 라. (생 략) <u><신 설></u>

2. · 3. (생 략) ④ ~ ① (생 략)

<u>500만원</u>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에 지급한 교육
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① (현행과 같음)